

간행물발간 편집위원회 규칙

제 정 2011. 07. 28

개 정 2015. 12. 30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효율적인 발간을 위하여 간행물발간 편집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5.12.30)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.

- 1. 연구원의 정기간행물
- 2. 연구보고서를 제외한 기타 간행물의 발간

제3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간행물의 발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2. 발간물의 내용 및 편집에 필요한 사항
- 3. 기타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내부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임한다.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원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3인 이상 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
제6조(심의내용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실비보상) ①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[별표] 기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·연구를 위한 제반비용 발생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12.30)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수당지급 기준

구 분	금 액	비 고
간행물발간 편집위원회	100,000~300,000원	저명도, 경력, 실적, 회의시간, 회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용

※ 전라북도지역 외 타 지역 거주자는 교통비 등 실비 추가지급 가능